

시설물운영관리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 공포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시설물운영규정관련 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. 3. .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

사 장 박 현 출 (인)

ㄱ 규정 제 352 호

ㄴ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

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(안)

1. 개정 사유

- 서울특별시조례시행규칙 개정(2015.7.1)에 따라 시설물운영규정 준용 조항 제15조(임대료)③항 으로 개정

2. 개정 내용 : 시설물운영규정 제15조 ③항

-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이 동 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준용조항 개정
- 축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합병으로 농·수·축협중앙회를 농·수협중앙회로 개정

3. 참고 사항

- 제안 근거 : 생략
- 예산 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합의 필
- 절 차 : 상위법령 등 개정에 의한 규정 정비
- 기 타 : 1. 시설물운영규정 개정(안) 1부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시설물운영규정 개정(안)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시설물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(임대료)

③ 사장은 임대보증금이 고액(2억원 이상)으로 시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임대보증금 총액의 1,000분의 300 범위 내에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정한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현금 이외의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농·수협중앙회 가락시장 지점의 양도성 예금금리에 의한 이자를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.〈신설 1996.11.23, 개정 2003.3.4〉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5조(임대료)</p> <p>③ 사장은 임대보증금이 고액(2억원 이상)으로 시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임대보증금 총액의 1,000분의 300 범위 내에서 조례 시행규칙 <u>제9조제5항</u>의 규정에 정한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현금 이외의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<u>농·수·축협중앙회</u> 가락시장 지점의 양도성 예금금리에 의한 이자를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.<신설 1996.11.23, 개정 2003.3.4></p>	<p>제15조(임대료)</p> <p>③ 사장은 임대보증금이 고액(2억원 이상)으로 시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임대보증금 총액의 1,000분의 300 범위 내에서 조례 시행규칙 <u>제8조제5항</u>의 규정에 정한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현금 이외의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<u>농·수협중앙회</u> 가락시장 지점의 양도성 예금금리에 의한 이자를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.<신설 1996.11.23, 개정 2003.3.4></p>